

의안번호	제 340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일 (제 279 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 출 연 월 일	2009년 4월 8일

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40
----------	-----

제출연월일 : 2009년 4월 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상기업에 제공할 부지를 매입하고자
- 제265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은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사업」의 매입토지 확정 등 사업변경과 일부재산을 우리 도가 유치하는 기업에 매각 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변경》

- 위치 : 도내 3개 지역 →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 25-1 등 39필지
- 매입규모 : 343,108㎡ → 39필지 161,103㎡(세부내역 : 붙임)
- 사업기간 : 2008.1~4 → 2008.1 ~ 2009.7
- 사업비 : 10,000백만원 → 2,856백만원

□ 재산의 처분

- 위치 :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 25-1 등 5필지
- 매각규모 : 70,909㎡(세부내역 : 붙임)
- 매각시기 : 2009.6~7(2개월)
- 매수자 : (주)케이테크 등 3개 기업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61,013.0	2,855,687				
	건물							
	기타							
1	토지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 등 39필지	161,013.0	2,855,687	2009	기업유치용 도유 지 조성	구자경 등 28명	보은, 영동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취득재산 목록

(단위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전소유자	비 고
	지목	소재지	수 량					
총계			161,013	2,855,687				
소계		보 은 군	70,909	931,675				
1	임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산25-1	62,479	668,526	09.3월	공장용지확보	구자경	매입
2	답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88	893	16,297	"	"	구자경	"
3	답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499-2	4,730	186,362	"	"	박주열	"
4	전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1	1,210	26,075	"	"	구자경	"
5	전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2	1,597	34,415	"	"	구자경	"
소계		영 동 군	90,104	1,924,012				
6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04-1	3,501	91,026	09. 6~9월	공장용지확보	곽석영	매입
7	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산32-3	793	10,309	"	"	곽석영	"
8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04	3,332	86,632	"	"	김두연	"
9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05	2,201	57,226	"	"	김두연	"
10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14	701	18,226	"	"	김두연	"
11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13-2	2,374	66,472	"	"	김두연	"
12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66	1,557	45,153	"	"	김득천	"
13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67-1	1,531	39,806	"	"	김명진	"
14	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산31-1	4,861	63,193	"	"	김명진	"
15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64-2	1,792	51,968	"	"	김병현	"
16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72	1,114	28,964	"	"	김연배	"
17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16	1,167	30,342	"	"	김인용	"
18	묘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16-1	30	780	"	"	김인용	"

(단위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 량					
19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17-1	1,501	42,028	09. 6~9월	공장용지확보	민영식	매입
20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71	1,263	32,838	"	"	박래희	"
21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15	2,311	60,086	"	"	박승현	"
22	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산32-1	12,893	167,610	"	"	선산곽씨 민공매중	"
23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03	2,212	57,512	"	"	염종진	"
24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70	2,727	79,083	"	"	유무성	"
25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74	2,800	72,800	"	"	이한경	"
26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67	1,124	32,596	"	"	정구열	"
27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65-2	3,487	101,123	"	"	정구열	"
28	답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412-1	4,648	130,144	"	"	정상영	"
29	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산30	1,210	18,150	"	"	정익현	"
30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68	628	16,328	"	"	최성고	"
31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69	1,775	46,150	"	"	최영자	"
32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73	436	11,336	"	"	최월순	"
33	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산35-2	9,124	155,108	"	"	연일정씨 민공매중	"
34	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산35-1	9,521	123,773	"	"	정선영	"
35	답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82	622	15,550	"	"	김기창	"
36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89	2,296	57,400	"	"	이명숙	"
37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92	1,147	28,675	"	"	정현	"
38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91	1,656	41,400	"	"	정현	"
39	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90	1,769	44,225	"	"	염창용	"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